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 당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전매체) 10. 24(화) 국무회의 종료시점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위원회 중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4개를 폐지하는 일괄 정비법률안, 24일 국무회의 통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4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회의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오늘 통과된 개정 법률안에 따라 폐지되는 위원회는 균형성장촉진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창업지원정책협의회 등 4개 위원회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14개 위원회를 10개 위원회로 축소하여 운영을 내실화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 황영호 기획혁신담당관은 “폐지된 4개 위원회의 기능은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분과별 전문위원회에 관련 전문가를 보강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혁신담당관	책임자	과 장	황영호 (044-204-7320)
		담당자	사무관	박근성 (044-204-734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장애인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기업----------.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삭 제>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6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 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술혁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의 국장급 공무원인 정부위원	<삭 제>

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 중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의 임원급 및 중소기업 기술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생 략)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의 기술혁신 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정부조직법」 제12조에 따른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시행기관인 공공기관	제3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3조의2제3항----------

및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부터 지원단에 파견된 임직원, 제29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 직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 ---------- ---------- ---------- ---------- ---------- ---------- ---------- ----------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제9조(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창업 촉진, 재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생 략)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21조(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현행과 같음) ②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 ③ (현행과 같음)